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지상상담」은 독자들이 염두에 둘 만한 페이지입니다. 이민·법률·부동산·세금·노동문제등에 관해 질문이 있으시면 본보 편집국 지상상담자에게 서면질의를 해주십시오. 질문서신에는 낮은인의 전화번호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적인 서신회답은 해드리지 않습니다. 편지보내실 주소 : The Korea Times 4525 Wilshire Blvd. LA, CA90010

가정법

변호사 : 신혜원



■ 전 남편이 사망했어도 자녀 양육비 받을 수 있나

〈문〉 저는 3년 전에 이혼을 하고 7세짜리 딸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이혼 판결문에 의하면 전 남편은 자녀 양육비로 한 달에 550달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 남편은 일년전 교통 사고를 당하여 심한 부상을 입고 투병중 열마전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전 남편은 Living Trust라는 것을 만들어 자신의 재산을 그의 어머니와 동생에게 분배되도록 했습니다. 전 남편이 사망한 이후부터 딸아이의 양육비 지급이 끊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귀하는 남편이 Living Trust에 집어넣은 상속 재산을 상대로 밀린 자녀 양육비의 지급과 앞으로 지속적인 양육비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해당 가정법원을 통해 신청해야 됩니다. 남편이 사망했다 해도 이혼 판결문에 따른 남편의 자녀 양육비 지급의 의무는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남편이 남긴 상속 재산(Estate)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 유산 상속법에 따르면 Living Trust의 작성에 의해서 남겨진 개인의 재산은 유산 상속법원의 법적 상속 절차에 의하여 처분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산 상속 법원의 권한과 절차에 따라 상속되어지는 Probate Estate와는 구분되어 진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 양육비 지급을 결정하는 가정 법원에서는 자녀 양육비 지급의 의무를 갖고 있는 부모의 사망시, 그가 Living Trust를 통해서 재산을 남겼든, 혹은 유산 상속 법원이 재산 상속을 관할 하도록 Probate Estate를 남겼든지에 상관없이 개인이 남긴 모든 재산은 자녀 양육비 지급 명령을 이행하는데 사용되도록 규정짓고 있습니다. 또한 귀하의 경우, 전 남편이 남긴 Living Trust의 내용이 재산이 그의 어머니와 동생에게 분배되도록 작성되어진 것에 상관없이 Living Trust에 있는 재산은 자녀 양육비 지급의 지속적인 이행을 위해 우선적으로 쓰여져야 합니다.

■ 형의 의붓아들도 형 재산 상속권 있나

〈문〉 저의 형님은 재혼을 해서 형수의 아들을 3세 때부터 키웠습니다. 형에게는 친자가 없습니다. 형과 형수는 형수 아들을 형의 친자로 입양하려고 시도했으나 형수의 전 남편의 원강한 반대로 포기했습니다. 형수의 전 남편은 병으로 오래 전에 사망했고 형수는 2년 전에 작고했습니다. 형은 형수의 아들과 함께 살다가 최근에 별세했습니다. 형수의 아들은 현재 40세이고 형은 유서를 남기지 않고 돌아가셨습니다. 형의 유일한 뒷줄은 동생인 저 하나인데 현재 형수의 아들이 상속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형수의 아들이 형의 아들로 상속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답〉 아니라고 봅니다. 캘리포니아주 유산 상속법 제6454조에 의하면 개인과 그의 의붓부모(stepparent) 간에 법적인 친자 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첫째, 개인이 미성년자일 때부터 의붓부모가 사망할 때까지 부모 친자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했어야 하며, 둘째, 친자 확립을 위한 입양을 평생 원했으나 단지 법적인 문제에 걸려 의붓부모가 사망하는 순간까지 입양이 불가능했음을 명확

한 증거로 법원에 증명해야만 비로소 개인이 의붓부모의 자녀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형님이 형수의 아들이 3세 때부터 형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자식처럼 키우고 또 형수가 작고한 이후에도 형수 아들이 형님을 지속적으로 아버지처럼 모시고 산 사실은 법이 요구하는 첫 번째 조건을 충족시킬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형님이 형수 아들을 친자로 입양하려고 시도했을 때 형수의 전 남편이 반대를 제기한 것은 법이 의미하는 법적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형수의 전 남편이 사망한 이후에는 입양이 법적 문제없이 충분히 가능했으며, 또한 형수 아들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입양에는 연령의 제한이 없으므로 법적 문제 없이 입양이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입양을 막는 법적 문제가 형님이 사망할 때까지 지속된 것이 아니라 형수의 아들을 형의 아들로 간주하여 상속 개인의 자격을 부여하기에는 두번째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형님이 유서를 남기지 않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귀하가 형님의 법적 상속인이 되리라 사료됩니다.

■ 소셜시큐리티 연금도 부부 공동 재산인가

〈문〉 개인의 Social Security Benefits가 이혼할 때 부부 공동 재산으로 취급됩니까?

〈답〉 연방법 Social Security Act에 의하면 개인이 자신의 취업에 근거해서 얻는 Primary Social Security Benefits는 개인의 사유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캘리포니아주 가정법의 결혼 기간에

취득한 모든 재산이나 혹은 재산권리는 부부 공동 재산이라는 기본 원칙에 예외라 할 수 있습니다. 단 부부가 공동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해서 노후에 Social Security Benefits를 받게 될 경우, 그 해택이 부부간에 나누어져야 하는 예외도 있습니다.